

보 수 규 정

제	정	2005. 04. 06.
개	정	2006. 10. 12.
개	정	2006. 12. 27.
개	정	2007. 07. 10.
개	정	2007. 12. 28.
개	정	2008. 04. 08.
개	정	2008. 07. 02.
개	정	2008. 10. 14.
개	정	2010. 09. 17.
개	정	2011. 12. 30.
개	정	2012. 05. 09.
개	정	2013. 07. 16.
개	정	2015. 03. 30.
개	정	2015. 10. 12.
개	정	2016. 04. 06.
개	정	2016. 10. 12.
개	정	2017. 12. 29.
개	정	2018. 07. 20.
개	정	2018. 09. 10.
개	정	2018. 12. 28.
개	정	2019. 12. 30.
개	정	2020. 06. 04.
개	정	2020. 12. 29.
개	정	2021. 06. 29.
개	정	2022. 04. 01.
개	정	2022. 12. 26.
개	정	2023. 09. 25.
개	정	2023.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상근 임원을 말하며,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②“보수”라 함은 연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④“연봉일액”이라 함은 연봉급을 연봉급 계약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⑤“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일액에 해당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장의 연봉급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책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연봉급의 계약은 이사장과 원장이 <별지서식 2>에 의한다. <개정 2006.12.27., 2020.12.29.>

1. 신규 임명되는 원장의 보수는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일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신설 2020.12.29.>

2. 임기 중 또는 연임하는 원장의 보수는 전라북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②초빙연구위원 및 위촉직 연구원의 보수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7., 2008.7.2.>

③부설기관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구원 제 규정 및 각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6.>

④청소원, 정리원의 보수는 '전북특별자치도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으로 정한다. 다만 이외에 건강검진비와 선택적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개정 2022.12.26., 2023.12.26.>

제2장 연 봉 급

제4조(연봉급의 구성) <개정 2017.12.29.> <삭제>

제5조(연봉급의 등급) ①초임 연봉급의 등급은 아래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8.>

1. 연구직 : 30등급(단일 연봉급) <개정 2008.10.14., 2011.12.30., 2015.3.30., 2022.4.1., 2023.12.26>

2. 관리직 2급 : 30등급

3. 관리직 3급 : 30등급 <개정 2008.10.14.>

4. 관리직 4급~5급, 정보직 가급~다급 : 30등급 <개정 2008.10.14., 2018.12.28., 2022.4.1>

5. 전문직 : 8등급 <신설 2018.12.28.><개정 2023.12.26.>

②각 등급별 초임 연봉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단, 전문직은 <별표 1-1>에 의한다. <개정 2007.12.28., 2008.10.14., 2018.12.28., 2022.4.1., 202

2. 12. 26., 2023.12.26)

제6조(초임등급 확정) ①직원의 신규임용 시 초임 등급 확정은 1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정한 경력사항을 초임등급에 가산한다. 다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7.10., 2007.12.28., 2018.12.28., 2022.4.1>

1. 원장은 ①에서 정한 초임연봉을 최대 30%범위 내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 경력직원의 경우 전임 근무지에서 최종 수령했던 연봉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범위 내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3. 기타 30% 이상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연봉급의 계약) ①원장은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른 승진, 승급 등을 참고하여 <별지서식 1>의 연봉급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7.12.28., 2008.10.14., 2016.10.12., 2017.12.29.>

②연봉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급 계약일 경우에는 신규 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연봉급은 연봉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하되 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일할계산 한 금액을 연봉급으로 한다.

제8조(연봉급의 조정) 초임연봉 기준표<별표 1> 및 연봉총액에 대한 인상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9조(채용계약 변경 시 연봉급의 재계약) ①채용계약 변경자의 연봉등급은 채용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봉급을 재계약 한다.

②채용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연봉급을 재계약할 때에는 채용계약 변경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를 연봉급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연봉급의 지급 방법) ①연봉급은 현금 지급한다.

②연봉급은 본인에게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연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④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방법을 조정한다.

제11조(연봉급 지급일) ①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봉급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장은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②연봉급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연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면직 등에 대한 연봉급 지급) ①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그 달이 속하는 일수를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달에 해당하는 연봉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급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급을 지급 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에 해당하는 연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급이 면직 당시의 연봉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연봉급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휴직기간의 연봉급 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10.12.>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 중 연봉급 계약이 만료되는 휴직자에 대한 연봉급은 복직 후 새로이 연봉급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특별휴가자의 연봉급) 복무규정 제2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거한 특별휴가자에 대한 연봉급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6.4.>

제15조(결근기간의 연봉급 감액)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청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10.12.>

제16조(징계처분기간 중의 연봉급 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연봉급의 감액은 인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감액은 징계처분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7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급 감액)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6.10.12.>

제17조의2(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 <신설 2023.12.26.> ①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8조(파견근무자 연봉급) ①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파견근무기간 중 연봉급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연봉급은 복귀 후 새로이 연봉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연봉급의 정산) ①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계산 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년도 근무기간
2. 연봉급 계약기간 내에 채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변경전의 당해 년도 근무기간

②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3장 실적평가금

제20조(실적평가금의 지급) 직원에게는 인사규정 제27조의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실적평가금을 년 1회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장의 경우 경영평가의 결과 등에 따라 년1회 실적평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08.10.14>

제21조(실적평가금의 지급기준) ①실적평가금은 근무실적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비평가 대상자인 임·직원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08.10.14.>

②실적평가금은 임·직원의 연봉급 총액 30% 이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되, 등급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0., 2008.10.14.>

제21조의2(특별상여금) 실적평가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별 상여금지급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0.14.>

제21조의3(연구수당) 용역사업수입 5%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제4장 수 당

제22조(기말수당) <삭제 2007.7.10.>

제23조(가족수당) ① <개정 2011.12.30., 2016.4.6.> <삭제 2018.9.10.>

②가족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육아 및 학비보조비) <삭제 2023.9.25.>

제25조(연차수당) ①임·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가보상비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9.12.30.>

1. 기준임금×연가보상일수(연가일수-사용연가일수)
2.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② <개정 2007.12.28.> <삭제>

제26조(직책급업무추진비) ①원장, 연구본부장, 실장에 대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5.9., 2015.3.30., 2018.7.20., 2018.12.28.,2023.12.26>

1. 원장 : 월 1,000천원 <개정 2008.7.2.>
2. 연구본부장 : 월 700천원 <개정 2008.7.2., 2011.12.30., 2015.3.30., 2018.7.20., 2018.12.28.,2023.12.26>
3. 실장 : 월 500천원 <개정 2008.7.2., 2012.5.9., 2015.3.30., 2018.12.28.,2023.12.26>

제26조의2(정액급식비)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4.8.> <개정 2022.4.1., 2023.12.26>

제26조의3(교통보조비)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50,000원 이내의 교통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전용승용차를 제공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4.8.>

제26조의4(건강검진비) 임·직원(또는 부양가족)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금액은 년 400천원 이내로 한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8.4.8.> <개정 2010.9.17.>

1. 당해 임·직원과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설 2008.4.8.>
2.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신설 2008.4.8.>

제26조의5(파견수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연구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파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5.3.30.>

제26조의6(초과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0.12.>

제5장 퇴 직 금

제27조(퇴직금의 적용) 퇴직금은 연구원에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의원면직, 근무상한 연령퇴직, 계약의 해지, 사망, 임기 만료 등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상근 임원과 직제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상근 직원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당일 이전 1년간 평균임금의 1개월분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6.10.12.>

제29조(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액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30조(특별 공로금) ①퇴직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당시 기준급여액의 200% 이내에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2. 연구원 업무 및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지급한다.

제31조(근무기간의 계산) ①근무기간의 계산은 총 고용계약 기간 중 퇴직일 현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보수를 받지 않은 휴직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타 직종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퇴직금의 지급) ①퇴직금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인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당사자가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32조의 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0.>

②원장이 제1항의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익월 20일까지 이를 심사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0.>

③제2항에 따라 심사·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0.>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직원

④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3>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3.30.>

제32조의 3(조기퇴직수당의 지급) ①직원으로서 3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30.>

②조기퇴직수당은 월봉금액의 계약기간 잔여월을 곱하여 산정하되, 최대 6개월 범위내로 한다. <신설 2015.3.30.>

제3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당해 임·직원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정산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잔여 근무년수는 새로이 기산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새로이 기산하는 계속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 기간에만 적용한다.

제34조(퇴직금의 지급 제한) ①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③임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12.26.>

제34조의 2(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제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6.29.>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수사 중인 자

제35조(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수규정

부 칙 <2006.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 승인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8.>

제24조에 따른 육아 및 학비보조비와 제26조의 2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26조의 3에 따른 교통보조비, 그리고 제26조의 4에 따른 건강검진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7.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9.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12.28., 2008.7.2., 2008.10.14., 2011.12.30., 2013.7.16., 2015.3.30., 2018.12.28., 2022.4.1.,2022.12.26.,2023.12.26>

초임연봉 기준표

(단위:천원)

직위 등급	연구직	정 보 직			관 리 직			
		가급	나급	다급	2급	3급	4급	5급
1	48,404	39,564	33,177	30,104	41,482	37,666	33,177	29,281
2	48,809	41,345	34,670	31,424	42,753	38,475	34,005	30,241
3	49,350	42,999	36,231	32,743	44,022	39,281	34,834	31,198
4	50,102	44,718	37,860	34,063	45,293	40,090	35,660	32,157
5	51,073	46,507	39,564	35,380	46,563	40,897	36,487	33,114
6	52,115	48,367	41,345	36,699	48,081	42,200	37,846	34,566
7	53,342	50,302	42,999	37,671	49,600	43,504	39,201	36,016
8	54,710	52,063	44,718	38,644	51,118	44,807	40,558	37,467
9	56,141	53,886	46,507	39,617	52,637	46,112	41,913	38,918
10	58,027	55,772	48,367	40,590	54,155	47,414	43,271	40,368
11	60,044	57,723	50,302	41,562	55,935	49,413	44,945	41,438
12	62,173	59,744	52,063	42,373	57,715	51,411	46,617	42,510
13	64,541	61,535	53,886	43,182	59,495	53,411	48,291	43,578
14	67,374	63,382	55,772	43,992	61,274	55,407	49,965	44,648
15	70,681	65,284	57,723	44,801	63,052	57,405	51,640	45,719
16	74,557	66,916	59,744	45,610	65,022	59,010	53,015	46,610
17	77,958	68,588	61,535	46,435	66,990	60,612	54,390	47,500
18	81,166	70,302	63,382	47,274	68,959	62,216	55,763	48,391
19	83,926	71,987	65,284	48,129	70,927	63,821	57,140	49,280
20	86,144	73,711	66,916	49,001	72,898	65,425	58,517	50,170
21	88,000	75,407	68,588	49,886	74,280	66,416	59,926	51,079
22	89,251	77,065	70,302	50,788	75,664	67,407	61,369	52,001
23	90,333	78,760	71,987	51,707	77,046	68,398	62,847	52,943
24	91,258	80,416	73,711	52,642	78,430	69,390	64,360	53,900
25	92,047	81,863	75,407	53,593	79,813	70,384	65,911	54,875
26	92,844	83,335	77,065	54,562	80,521	71,390	67,497	55,867
27	93,647			55,327	81,228	72,410	69,122	56,878
28	94,458			56,101	81,937	73,446	70,788	57,905
29	95,277			56,885	82,645	74,496	72,493	58,952
30	96,100			57,683	83,354	75,561	74,238	60,018

〈별표 1-1〉 〈신설 2018.12.28.〉 (개정 2022.4.1.,2022.12.26.,2023.12.26)

전문직 경력환산 및 초임연봉 기준표

(단위:천원)

초 임 연 봉 등급 및 기준액		경 력 환 산 기 준
8	32,530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7	31,399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6	30,268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8년 이상인 자
5	29,137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미만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6년 이상인 자
4	생활임금기준액 ^① x104.2%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6년 이상인자
3	생활임금기준액 x102.8%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5년 이상인자
2	생활임금기준액 x101.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4년 이상인자
1	생활임금기준액 x100%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미만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3년 이상인자

① 생활임금기준액 : 생활임금 연봉기준(생활임금 x209시간x12개월) - 수당(급식비,교통비)

② 전문직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 대비 3년 이상 12년까지의 경력·군경력이 미반영 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1년당 1.4%(정부 호봉승급 기준)을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08.10.14., 2011.12.30., 2015.3.30., 2018.12.28., 2022.4.1.,2023.12.26>

경 력 환 산 표

가. 기 준 <개정 2022.4.1.,2023.12.26>

직 급	경 력	환산율
연구직 <개정2023.12.26.>	1. 학위경력(박사4년) 2. 일반경력(박사학위취득 이후) <개정 2022.4.1.>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관리직 정보직	1. 공무원경력 2. 군복무기간 3. 일반경력	100%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나. 일반경력환산표 <개정 2022.4.1.,2023.12.26.>

직 급	경력내용	환산율
연구직 <개정2023.12.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 단체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100%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80%
	다. 기타 근무경력	70%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대학 근무경력	
	가.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100%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80%
	다. 기타 근무경력	70%
	3. 기타 법인·단체·민간기업체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80%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70%	
다. 기타 근무경력	50%	
관리직 정보직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100%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80%
	다. 기타 근무경력	70%
	2. 기타 법인·단체·민간기업체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80%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70%
	다. 기타 근무경력	50%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3년 이상 5년 이내의 자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자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금액은 연봉월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지서식 1><개정 2015.10.12., 2016.10.12.>

전북연구원 연봉계약서

임용자 전북연구원장과 피임용자 는(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내용) ①쌍방의 계약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계약금액 : 합계 금 원정 (₩) <삭제 2016.10.12.>

2. 연봉계약기간 : ~

② <삭제 2016.10.12.>

제2조(연봉의 지급) ①연봉의 지급은 발령일, 면직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봉계약금액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다만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연봉 외의 성과급 등) ①임용자는 제1조 제1항 제1호의 연봉계약금액 외에 성과에 따라 보수규정 제3장에 정한 실적평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자는 보수규정과 복리후생비 지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봉의 감액) 휴직기간, 결근기간,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보수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연봉을 감액한다.

제5조(연봉급의 정산) ①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계산 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2. 연봉급 계약기간 내에 채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변경전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②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6조(퇴직금) ①근속년수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보수규정

제7조(규정의 적용) 연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연구원 보수규정 및 연구원 관계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임 용 자 : 전복연구원장 (인)

피임용자 : 성명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